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65
----------	-------

발의연월일 : 2026. 10. 12.

발 의 자 : 조정훈 · 김대식 · 서천호

김용태 · 박충권 · 윤용근

이소희 · 최수진 · 엄태영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자력 부족,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장기화, 피해자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행법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다수에게 소액 또는 비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개별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될 수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16(구조금의 지급)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대하여 이 법 위반 사실 및 유출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서 그 유출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민감도, 유출 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자의 연령·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 구조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7(손해배상과의 관계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등을 원인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39조의16에 따라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

당 구조금을 받은 정보주체가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조금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8(구조금의 환수) 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2.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제39조의19(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3. 제39조의17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39조의16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의20(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호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1(기금의 회계기관) ① 보호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39조의20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39조의22(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9조의16(구조금의 지급) ① 보</u> <u>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유출등</u> <u>에 대하여 이 법 위반 사실 및</u> <u>유출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서</u> <u>그 유출등으로 인하여 피해를</u> <u>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u> <u>자로부터 그 손해의 전부 또는</u> <u>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u> <u>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구조</u> <u>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은 유</u> <u>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민감</u> <u>도, 유출 규모, 피해 발생 가능</u> <u>성, 피해자의 연령·취약성 등</u> <u>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u> <u>경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u> <u>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 구조금</u> <u>을 가산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u> <u>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신 설>

제39조의17(손해배상과의 관계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의 유출등을 원인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39조의16에 따라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정보주체가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조금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18(구조금의 환수) ① 보

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2.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제39조의19(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3. 제39조의17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 설>

<신 설>

1. 제39조의16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의20(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호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1(기금의 회계기관) ①

보호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신 설>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39조의20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
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
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
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
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
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
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
수입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
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
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
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39조의22(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
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